

# 투자권유준칙

## 제 1 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0 조제 1 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주)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3.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4.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가.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각목의 금융투자상품

## 제 3 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 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4 조(방문목적 확인)

- ① 임직원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 5 조(일반·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법 제 9 조제 5 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제 6 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 호]의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④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 120 조제 1 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 132 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 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제 7 조(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 1 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 11 조 제 6 항에 따른(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전화,팩스,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금소법시행령 제 11 조제 2 항에 따른 전자적 수단(이하

“서명”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 10 조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③ 임직원은 제 2 항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 8 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 1 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제 1 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 2 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 3 절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 제 9 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제 10 조(투자권유 절차)

① 임직원 등은 회사가 정한 <별지 제 2 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 호>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제 3 항의 단서조항 투자자에게 제 3 항의 단서조항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 교부대상자: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나. 대상상품:ELF, DLF

⑤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 17 조제 2 항 또는 제 18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 11 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① 임직원 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 10 조 제 1 항에 따른 <별지 제 2 호>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참고 제 1 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65 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 12 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1)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투자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사모펀드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 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금융투자상품 :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마.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바.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사. 자기 또는 제 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아. 투자자가 법 제 174 조, 제 176 조 또는 제 178 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자. 금소법 제 17 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차.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제 12 조 2(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①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투자권유불원 등)는 영업점 책임자를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을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 13 조(설명 의무)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나. 임직원 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③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④ 임직원 등은 제 1 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경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임직원 등은 제 1 항 부터 제 4 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 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 123 조제 1 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다.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⑦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⑧ 임직원등은 제 1 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임직원등은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⑩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 제 14 조(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 13 조 제 1 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나.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 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라.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 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 제 15 조(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

- ① 회사는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 및 [별지 제2호]의 투자자성향 분류 및 적합성 판단 방식을 참고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 ② 위험등급은 최소 6 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 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은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제 15 조의 2 (계약서류의 교부)

- ①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 서면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③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 제 15 조의 3(청약의 철회)

- ①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 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 37 조제 2 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제 15 조의 3 및 제 15 조의 4 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가. (금소법제 23 조에제 1 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나. (금소법제 23 조에제 1 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 ①의 1 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약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의 2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①의 3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②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③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 15 조의 4(위법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금소법 제 17 조(적합성 원칙)제 3 항, 제 18 조(적정성 원칙)제 2 항, 제 19 조(설명 의무)제 1 항·제 3 항, 제 20 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 1 항 또는 제 21 조(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 9 조제 22 항에 따른 집합투자계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나.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② 투자자가 제 1 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 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별지 제 5-2 호]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다.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라.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 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 47 조제 1 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2)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 47 조제 1 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마.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경우

④ 회사는 제 2 항, 제 3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제 16 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 103 조제 3 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나.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 제 17 조(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가.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나.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다.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라. 개별 매매거래 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금융투자 상품시장에서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부당한 권유 금지

가.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임직원은 법 제 55 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 71 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자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 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 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생주식총수의 1%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바.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사.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자.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 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 상품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8 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등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사의 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아.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자.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카. 법 제 99 조제 1 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타.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 4-73 조 각 호의 사항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 23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1 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가. 제 1 항의 각 호의 사항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마. 투자일임재산이 위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 19 조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 1 항 및 제 2 항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①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②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 3 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③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 20 조 (투자일임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 1-1 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임직원등은 ①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다. ①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제 21 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①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 26 조 참조)를 10 년(계약 기간이 10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동안) 또는 5 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 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6 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년 4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년 7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년 6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의 경우에는 2023 년 6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년 8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개인고객	법인고객
<p>1. 고객님의 연령대</p> <p>① 만 19 세 이하    ② 만 20 세~30 세          ③ 만 31 세~54 세    ④ 만 55 세~64 세    ⑤ 만 65 세 이상</p>	<p>1. 고객님의 자본금 규모(총자본기준)</p> <p>① 200 억이상    ② 100 억이상~200 억미만          ③ 50 억이상~100 억미만    ④ 10 억이상~50 억미만          ⑤ 10 억미만</p>
<p>2. 투자하실 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p> <p>① 6 개월 미만    ② 6 개월 이상~1 년 미만    ③ 1 년 이상~2 년 미만    ④ 2 년 이상~3 년 미만    ⑤ 3 년 이상</p> <p>3.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상품(중복선택 가능)</p> <p>①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②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③ 신용도 중간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④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 비보장 ELS, 시장수익율 수준의 수익을 추구 주식형펀드 등          ⑤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율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p> <p>4.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경험 기간</p> <p>① 전혀 없음    ② 1 년 미만    ③ 1 년 이상~3 년 미만    ④ 3 년 이상~5 년 미만    ⑤ 5 년 이상</p> <p>5. 금융투자상품 취득 및 처분 목적</p> <p>① 채무상환    ② 생활비    ③ 주택마련    ④ 여유자금    ⑤ 자산증식</p> <p>6.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지식 수준</p> <p>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②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③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④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p> <p>7.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p> <p>①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②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③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p>	
<p>8. 보유자산</p> <p>① 1 억 미만    ② 1 억 이상~2 억 미만          ③ 2 억 이상~5 억 미만    ④ 5 억 이상~10 억 미만          ⑤ 10 억 이상</p>	<p>8-1. 연매출현황(법인)</p> <p>① 10 억 미만    ② 10 억 이상~50 억 미만          ③ 50 억 이상~100 억 미만    ④ 100 억 이상~200 억 미만          ⑤ 200 억 이상</p>
<p>9. 향후 자신의 수입원에 대한 예상</p> <p>①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②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③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p> <p>10. 기대이익 수준</p> <p>① 원금기준 10%범위    ② 원금기준 20%범위    ③ 원금기준 30%범위    ④ 원금기준 50%범위    ⑤ 원금기준 100% 범위</p> <p>11.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p> <p>① 원금기준 -10%범위    ② 원금기준 -20%범위    ③ 원금기준 -30%범위    ④ 원금기준 -50%범위    ⑤ 원금기준 -100% 범위</p> <p>12. 고객님의께서는 아래와 같은 금융취약계층 투자자에 해당하십니까?</p> <p><input type="checkbox"/> 고령자(만 70 세이상)    <input type="checkbox"/> 미성년자    <input type="checkbox"/> 은퇴자    <input type="checkbox"/> 금융상품투자 무경험자    <input type="checkbox"/> 주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p> <p>13. 파생상품,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경험이 있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개월)</p>	



## [투자일임]투자자 정보 확인서(법인)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님의 투자성향을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확인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4-77 조 및 제 4-93 조에 따라 고객님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투자자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금융소비자	<input type="checkbox"/> 전문금융소비자
-------	----------------------------------	----------------------------------

등록구분	본인/대리인 구분
<input type="checkbox"/> 등록 <input type="checkbox"/> 정정 <input type="checkbox"/> 기존정보와 동일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개설대리인

질문내용	점수화
1. 고객님의 자본금 규모(총자본기준) ① 200 억이상(10 점) ② 100 억이상~200 억미만(9 점) ③ 50 억이상~100 억미만(8 점) ④ 10 억이상~50 억미만(7 점) ⑤ 10 억미만(6 점)	
2. 투자하실 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 ① 6 개월 미만(5 점) ② 6 개월 이상~1 년 미만(6 점) ③ 1 년 이상~2 년 미만(7 점) ④ 2 년 이상~3 년 미만(9 점) ⑤ 3 년 이상(10 점)	
3.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상품(중복선택 가능) ①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6 점) ②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7 점) ③ 신용도 중간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8 점) ④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 비보장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률 추구 주식형펀드 등(9 점) ⑤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10 점)	
4.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경험 기간 ① 전혀 없음(0 점) ② 1 년 미만(7 점) ③ 1 년 이상~3 년 미만(8 점) ④ 3 년 이상~5 년 미만(9 점) ⑤ 5 년 이상(10 점)	
5.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지식 수준 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6 점) ②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7 점) ③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8 점) ④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9 점)	
6. 투자수익위험에 대한 태도 ① 투자 수익을 고려하나 원금 보존이 더 중요 (8 점) ② 원금 보존을 고려하나 투자 수익이 더 중요 (9 점) ③ 손실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이 중요 (10 점)	



7. 연매출현황(법인) ① 10 억 미만(5 점) ② 10 억 이상~50 억 미만(6 점) ③ 50 억 이상~100 억 미만(7 점) ④ 100 억 이상~200 억 미만(8 점) ⑤ 200 억 이상(10 점)	
8 기대이익 수준 ① 원금기준 10%범위(6 점) ② 원금기준 20%범위(7 점) ③ 원금기준 30%범위(8 점) ④ 원금기준 50%범위(9 점) ⑤ 원금기준 100% 범위(10 점)	
9.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 ① 원금기준 -10%범위(6 점) ② 원금기준 -20%범위(7 점) ③ 원금기준 -30%범위(8 점) ④ 원금기준 -50%범위(9 점) ⑤ 원금기준 -100% 범위(10 점)	

본인이 다음과 같이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향후 24 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해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니다.

년 월 일


고객명 \_\_\_\_\_ (인/서명) / 대리인명 \_\_\_\_\_ (인/서명)

**<투자자 유형>**

▣ 본 투자자의 유형 분석 결과는 투자자 정보 확인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수익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투자자 유형 분류 참고사항>**

공격투자형	1 단계	높은위험  낮은위험
적극투자형	2 단계	
위험수익중립형	3 단계	
안정추구형	4 단계	
안정형	5 단계	

· 점수에 의한 투자자성향 분류

점수 결과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5 단계로 분류

- 59 점이하 : 안정형
- 59 점초과~66 점이하 : 안정추구형
- 55 점초과~73 점이하 : 위험중립형
- 73 점초과~80 점이하 : 적극투자형
- 80 점초과 : 공격투자형

<별지 제 2 호>

## 투자자성향 분류 및 적합성 판단 방식

### 1. 투자성향 점수화 방식

□ 문항별 배점

○ 1 번

① 5점 ② 8점 ③ 9점 ④ 7점 ⑤ 6점

○ 2 번

① 5점 ② 6점 ③ 7점 ④ 8점 ⑤ 9점

○ 3 번

① 5점 ② 6점 ③ 7점 ④ 8점 ⑤ 9점(중복 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4 번

① 5점 ② 6점 ③ 7점 ④ 8점 ⑤ 9점

○ 5 번

① 5점 ② 6점 ③ 7점 ④ 8점 ⑤ 9점

○ 6 번

① 6점 ② 7점 ③ 8점 ④ 9점

○ 7 번

① 7점 ② 8점 ③ 9점

○ 8 번

① 5점 ② 6점 ③ 7점 ④ 8점 ⑤ 9점

○ 9 번

① 9점 ② 8점 ③ 7점

○ 10 번

① 5점 ② 6점 ③ 7점 ④ 8점 ⑤ 9점

○ 11 번

① 5점 ② 6점 ③ 7점 ④ 8점 ⑤ 9점

### 2. 점수 계산 방식

□ 1 번부터 11 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

예)1 번부터 11 번까지의 합이 70 점인 경우, 70 점

### 3. 점수에 의한 투자자성향 분류

□ 점수 결과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5 단계로 분류

○ 59 점이하 : 안정형

○ 59 점초과~66 점이하 : 안정추구형

○ 55 점초과~73 점이하 : 위험중립형

○ 73 점초과~80 점이하 : 적극투자형

○ 80 점초과 : 공격투자형

4.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 상품 분류기준

구 분	매우높은위험 (1 등급)	높은 위험 (2 등급)	다소높은위험 (3 등급)	보통위험 (4 등급)	낮은위험 (5 등급)	매우낮은위험 (6 등급)
공격투자형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적극투자형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위험중립형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안정추구형					투자권유가능	투자권유가능
안정형						투자권유가능

## 청약 철회 요청서

계좌번호	고객명	생년월일

**▣ 청약 철회 대상**

- 다만,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 철회 상품	□ 투자성상품( )
1)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_____년 _____월 _____일
2)계약 체결일 (금소법령에 따라 계약서류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_____년 _____월 _____일

**▣ 주의 사항**

-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고객은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발송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년            월            일

고객명 \_\_\_\_\_(인/서명) / 대리인명 \_\_\_\_\_(인/서명)

##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

계좌번호	고객명	생년월일

**▣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계약해지 대상 상품명	
계약체결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계약해지 사유	<input type="checkbox"/>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 17③) <input type="checkbox"/>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 18②) <input type="checkbox"/>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 19①, ③) <input type="checkbox"/>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 20①) <input type="checkbox"/>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 21)

**▣ 계약해지 사유의 근거**

증빙자료	
참고자료	

**▣ 안내 사항**

- 본 신청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와 체결한 위법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제 2 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고객명 \_\_\_\_\_(인/서명) / 대리인명 \_\_\_\_\_(인/서명)

## 위법계약 해지 요구 관련 통지서

계좌번호	고객명	생년월일

### ▣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	<input type="checkbox"/> 적합성 원칙 위반 (금소법 § 17③) <input type="checkbox"/> 적정성 원칙 위반 (금소법 § 18②) <input type="checkbox"/> 설명의무 위반 (금소법 § 19①, ③) <input type="checkbox"/> 불공정영업행위 (금소법 § 20①) <input type="checkbox"/> 부당권유금지 위반 (금소법 § 21)
회사의 판단 결과	<input type="checkbox"/>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수락 <input type="checkbox"/>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거절
(거절시) 회사의 정당한 사유	
(거절시) 정당한 사유의 객관적·합리적 근거	

### ▣ 안내 사항

-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제 2 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주)

<참고 제 1 호>

##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 1. 고령 투자자의 정의

○ 회사는 65 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80 세 이상은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합니다

### 2.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 1)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마련

○ 회사는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업점에 고령투자자 전담 창구를 설치합니다.

#### 2) "투자권유 유의상품"지정

○ 회사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변동성이 크거나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합니다.

#### 3) "투자권유 유의상품" 투자권유시 사전 확인

○ 회사는 임직원이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관리직 직원이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투자권유시 배석 등)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하고 확인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 관리직 직원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초고령자에게 판매가 부적절한 상품으로 설명서 또는 회사 판매정책에 반영된 상품을 투자권유할 수 없고, 임직원의 투자권유가 없는데도 고객이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설명하는 등 판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는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거나 가족 등에게 투자사실을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을 대신하여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녹취제도 및 숙려제도

○ 회사는 65 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3. 고령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 강화

#### 1)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고령투자자나 조력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2) 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내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점검

○ 회사는 준법감시부서를 통해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